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공고 제 2026 - 2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전 문 임 기 제 공 무 원 채 용 공 고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지급	인원	채용기간	근무부서
부마민주항생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의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채용일로부터 2027.12.31.	심사보상과 (서울 종로구) * '27년 하반기 세종시 이전

※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예정 직무

채용분야	주요 업무
부마민주항생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의	▸부마민주항쟁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진상규명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조사 심사, 안건검토 및 분석 ▸국내·외 관련 문헌 등 자료 수집 및 검증·분석 등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

4.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 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시험예정일(2026.12.15.)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6.) 기준]

※ 학위 요건(학위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구 시 제외)의 경우 학위 취득 판단기준일: 임용예정일(2027.1.15.) 기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직위별 요건	
희생자 조사·심사	전문임기제 나급	경 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 행정·공공·연구·민간기관 등에서 역사, 과거사, 사회, 법무, 인권, 노동, 조사·수사·감사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 공인된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강사 이상의 경력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 행정·공공·연구·민간기관 등에서 역사, 과거사, 사회, 법무, 인권, 노동, 조사·수사·감사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 공인된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강사 이상의 경력 ※ **임용 예정 직무분야 학위**: 역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채용예정직위 세부 응시자격요건은 붙임2 '직무기술서' 참고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반드시 1개만 선택**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5.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7.1.1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예: 주 00시간) **기재**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경력' 요건 ①번 또는 ②번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경력은 불인정**(공무원 경력이 아닌 민간경력을 의미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 공무원임용규칙 [별표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1]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학위로 지원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인준서, 논문목차 및 논문요약본 등 반드시 제출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 요소]
-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평가 방식(안)]
- 개별면접(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6..11.20.(금) ~12.1.(화)	'26.11.26.(목) ~12.1.(화)	'26.12.4.(금) <예정>	'26.12.15(화) <예정>	'26.12.30.(수) <예정>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시험장소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buma.go.kr)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보

7.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11.26.(수) ~ 12.1.(화) 18:00까지** ＊ 제출 마감일 엄수

○ 제출방법 : 전자우편(bumpy98@korea.kr)으로 제출

– 전자우편 :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경우 유효하며,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 확인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함)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받아 **응시원서 뒤에 첨부 (수입인지 미발급·미첨부 시 필수서류 미비로 불합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메일 제목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응시원서 제출(성명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시 서류들은 **A4사이즈로 스캔하여 단 1개의 파일(파일형식 PDF)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쪽 모아찍기' 등 금지**되며, 메일의 첨부파일 중 가장 위에 있는 파일 1개만 정상 접수로 인정됩니다.)

※ **방문·택배·퀵서비스·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으며, 제출기간 초과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됩니다.**

※ 원서접수기간(2026.11.26., 09:00)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미리 제출한 원서는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반드시 “붙임 3(제출서류 안내)”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기본 서류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 등본 불인정 ※ 개명한 경우 개명 내역이 포함되게 제출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현역은 군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10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빙 용도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으며,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02-2100-1504)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1매 이내의 요약서(별지 서식)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7.12.30. ~ ’27.1.30.(최종합격자발표일~1개월간)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 1. 15.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결과 및 관련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86,606천원	57,708천원

※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급여는 별도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경력 검증 및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위증명서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변경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84조의2,「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장,「형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지원단 기획총괄과(☎02-2100-1504)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 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심사보상과 (서울 종로구)

주요 업무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조사 심사, 안건검토 및 분석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 수집 ○ 국내·외 관련 문헌 등 자료 수집 및 검증·분석 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조정능력,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협상력, 정보관리능력, 상황판단 능력, 계획관리능력
필요 지식	○ 한국 근·현대 사회·역사·문화 등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지식 ○ 조사계획수립, 분석 등을 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조사방법(인터뷰, 사실조사 등), 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지식

응시자격요건	응시요건	**경 력**	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②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③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 행정·공공·연구·민간기관 등에서 역사, 과거사, 사회, 법무, 인권, 노동, 조사·수사·감사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 공인된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강사 이상의 경력
		학 위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 예정 직무분야 경력**: 행정·공공·연구·민간기관 등에서 역사, 과거사, 사회, 법무, 인권, 노동, 조사·수사·감사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 공인된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강사 이상의 경력 ※ **임용 예정 직무분야 학위**: 역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학과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6.12.15.예정) 기준, 학위 소지 여부는 임용예정일(2027.1.1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붙임 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반드시 1개의 파일(pdf형태)로 A4 사이즈 스캔 후 제출(제출 전 페이지 누락 여부, 서명 누락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2쪽 모아찍기' 등 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기본 서류 1부 (별지서식 제1호)	ㅇ 필수 제출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받아 **응시원서 뒤에 첨부** **(수입인지 미발급·미첨부 시 필수서류 미비로 불합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담당업무의 추진계획·수단·방법·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용지 6매 이내 작성(요약서 1매를 포함할 수 있음)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ㅇ 동의 여부 표시 및 자필 서명 필수
8. 주민등록 초본 1부 : 필수서류	ㅇ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발급 ㅇ 주민등록 등본 불인정 ㅇ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현역은 군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 해당자에 한함 ㅇ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담당자) 연락처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10.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석·박사 학위가 응시요건에 필수적인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해당 논문의 표절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함께 제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1.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 요약서 및 논문 사본 각 1부 (별지서식 제10호)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연구논문 요약서 1부(별지서식 제10호)** ㅇ 논문표지 및 제목,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첨부 ※ 최근 5년 이내(2021.9.18.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KCI 등재후보지는 해당 없음)
12.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증명 용도 제출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기본 서류

응시직급	전문임기제 나급	응시분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성 명		출생년월일	년 월 일
응시자격요건	□ 경력① □ 경력② □ 경력③ □ 학위① □ 학위② □ 학위③ ※ 해당요건 체크(✓)		

□ 작성(제출) 목록

연번	목 록	작성(제출)여부
1	응시원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전자수입인지 포함)	
2	이력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3	자기소개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7	주민등록초본(**응시자 전원 필수 제출**)	
8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9	전문학사 이상 졸업 증명서(학위증) 및 학위논문요약서	
10	연구논문 요약서 및 사본(논문 인준서, 논문목차, 논문요약본 등)	
11	가족관계증명서	

* 내용을 제출한 항목은 작성여부 란에 “○”, 미작성한 항목은 “X” 표시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인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응 시 원 서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조사·심사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 하나의 응시자격만 선택할 것(중복선택 또는 미선택 시 불합격 처리)**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응시자격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장소에 사전등록시간까지 집결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3. 모든 기재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 가능하며, 날인 및 서명은 반드시 도장 또는 수기로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원서 상단의 "날인 또는 서명"란에 **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 기재**
(예) 전문임기제 나급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③ 응시자격 : 공고문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하나를 선택(v, ■ 등)

※ 미선택·중복선택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서류 심사 불합격 등)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④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⑤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⑥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⑦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⑧ 정부수입인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직급별(나급은 10,000원)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를 응시원서 뒤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응시 분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조사심사	응시 자격 요건	경력			학위			성명	
					경력1 □	경력2 □	경력3 □	학위1 □	학위2 □	학위3 □		

2. 응시자격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경력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팀장 (5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	*국제통상학*	*'00.00.00*	*국제통상학 석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공통사항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응시자격 요건 중 1곳만 선택

③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2. 응시자격 ※ 증빙서류가 없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에 작성 금지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응시자가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하며 '학위'요건으로 응시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반드시 작성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 하여야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6월 10일 → **18개월 10일**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학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응시자가 '학위'요건으로 응시한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 자기소개서

※ 작성하실 때 본 내용(작성요령)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쪽번호 부여)

○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줄 간격 160%로 작성

○ 지원배경, 관련분야 수행 경험 등 필수 기재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공무원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민간인은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서를 붙임 문서로 첨부할 수 있음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나급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하실 때 본 내용(작성요령)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A4용지 6매(요약서 1매 포함) 이내로 작성(쪽번호 부여)

○ 글자크기 13포인트, 글씨체 휴먼명조, 줄 간격 160%로 작성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 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근무형태 ②	비고
	부터	까지					
	(예시) '12.6.30	*'14.7.1*	*㈜ 00*	*주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연락처	※ 필수기재
성 명	(인)

확 인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근무형태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 : 주 00시간)
③ 발급자(해당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락처 필수기재
④ 발급자 또는 확인자 가운데 반드시 1명 이상 인사담당자가 포함되어야 함
⑤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간 별도 표시

<별지서식 제9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전문임기제 나급

학위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심사 년월일 : ○ 지도교수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인)

※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 논문 표절 검사 결과지 첨부

<별지서식 제10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연구논문 요약서

성 명	직무분야	응시직급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조사·심사	전문임기제 나급

논문개요	○ 논문제목 ■ 한글명 : ■ 영문명 : ○ 논문 게재지 및 게재일자 ■ 등재구분("✓" 표기) : □ SCI □ SSCI □ A&HCI □ SCIE □ SCOPUS □ KCI(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게재지명 : ■ 게재일자 : ○ 발표자 성명(공동연구자 포함) : ■ 응시자(논문기여도) : 홍길동 (제2저자/5인) ■ 공동연구자 :

주요내용 요약

Ⅰ. 연구목적
1.
가.
1)
가)
(1)
(가)

Ⅱ. 연구내용

Ⅲ. 연구결과의 활용도(구체적으로)

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 (인)

※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함께 제출